

의안
번호

369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369호
- 다. 제출일자 : 2024. 11. 7.
-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를 위한 분뇨 수집·운반업체 대행 계약 방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노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방법 변경(안 제8조제3항)

나. 대행업체 적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 안 제8조의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9. 19. ~ 2024. 10. 10.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계약 및 재계약 심사 등을 위한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안 제8조의2에서부터 안 제8조의4까지 적격심사위원회 관련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방법을 변경한 것이며,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생 략)	제8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u>자</u> 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u>자</u> 를 적격심사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 단위로 하며 <u>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u>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 단위로 하며 적격심사 후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안 제8조의2부터 안 제8조의4까지는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대행 계약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7명 이내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등 적격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 적격심사 절차를 신설함.

〈안 제8조2부터 제8조4까지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적격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8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및 재계약 심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할 때마다 설치할 수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제8조의3(적격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되되,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환경 관련 단체: 3명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제8조의4(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심의안건 및 결과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근거를 마련하여 대행업체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